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97,583,928	38,927,518
일반회계	1,214,992,107	36,449,763
특별회계	82,591,821	2,477,755
기타특별회계	82,591,821	2,477,75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3,112	12,093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59,352,866	1,780,5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327,625	279,829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122,971	303,689
수질개선 특별회계	61,468	1,844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3,111	9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183,121	35,49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03,181	9,095
주차장 특별회계	1,834,366	55,03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8,616,540천원(일반 4,000,000, 재해·재난목적 154,616,540)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명시이월포함)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